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빙삭기의 안전관리 수준을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조정하고,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감열지를 안전 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추가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2호다목1)을 삭제한다.

별표 2 제3호다목에 2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) 빙삭기	☐ 재질 ☐ 용량
--------	--

별표 2 제4호나목에 20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0) 감열지	-
---------	---

별표 4 제2호다목1)을 삭제한다.

별표 5 제2호다목에 2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) 빙삭기

별표 6 나목에 20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0) 감열지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2 제4호 나목20) 및 별표 6 나목20)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	개정안		
[별표 2] 생활용품분류별 모델구분(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) 2.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			[별표 2] 생활용품분류별 모델구분(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) 2.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		
분류		모델 구분	분류		모델 구분
다. 기계 금속	1) 빙삭기	○ 재질 ○ 용량	다. 기계 금속	1) <삭제>	<삭제>
	2)~10) (생략)	(생략)		2)~10)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3.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			3.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		
분류		모델 구분	분류		모델 구분
다. 기계 금속	자동차용 휴대용 잭	-	다. 기계 금속	1) 자동차용 휴대용 잭	-
	<신설>	<신설>		2) 빙삭기	○ 재질 ○ 용량
4.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			4.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		
분류		모델 구분	분류		모델 구분
나. 생활	1)~19) (생략)	(생략)	나. 생활	1)~19)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<신설>	<신설>		20) 감열지	-

[별표 4]

안전확인대상제품(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)

2.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

분류	품목
다. 기계	1) 빙삭기
금속	2)~3) (생략)

[별표 5]

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(제3조제5항 및 제6항 관련)

2.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

분류	품목
다. 기계	자동차용 휴대용 잭
금속	<신설>

[별표 6]

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(제3조제7항 관련)

분류	품목
나. 생활	1)~19) (생략)
	<신설>

[별표 4]

안전확인대상제품(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)

2.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

분류	품목
다. 기계	1) <삭제>
금속	2)~3) (현행과 같음)

[별표 5]

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(제3조제5항 및 제6항 관련)

2.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

분류	품목
다. 기계	1) 자동차용 휴대용 잭
금속	2) 빙삭기

[별표 6]

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(제3조제7항 관련)

분류	품목
나. 생활	1)~19) (현행과 같음)
	20) 감열지